

제 92회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 제 8차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



2014. 6. 30(월), 오후 2:00~4:00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

포럼 참여 국회의원 김기준 김현미 노웅래 박원석 설훈 이연주 이학영 전순옥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익락



# 목 차

## 인사말

김기준 국회의원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 공동대표)

## 축사

박영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이금자 (생협전국협의회 대표/두레생협연합회 회장)

## 주제발표1

소비자생협법 개선과제 : 99% 시민의 사업체를 향한 차별시정 요구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13

## 주제발표2

신용협동조합의 현황과 필요한 법, 제도 개선과제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 ————— 33

## 지정 토론

오세영 (한살림연합 기획실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준입니다.

제 92회 세계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제8차 국회협동조합 활성화포럼을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빛내기 위해 축사를 해주신 박영선 원내대표님, 문철상 신협중앙회장님, 이금자 생협전국협의회 대표님과 사회를 맡아 주신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하시는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오세영 한살림연합 기획실장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님,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래로 전국의 협동조합 설립 수는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5000여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더 높아졌고 그 열기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이 열풍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가치가 실현되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천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 및 성장을 할 수 없다면 열풍은 곧 한낱 유행에 불과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와 튼튼한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시기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신발끈을 고쳐 메고 뛰어야 할 시기입니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설립절차 중심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 세무·회계, 노무·인

사, 마케팅, 홍보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협동조합 운영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협동조합 정신과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협동조합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사례 분석하는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입법 활동 및 제도정비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현장을 방문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의견수렴을 꾸준히 하는 동시에 조합원들간의 소통 강화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힘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회의원 김 기 준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입니다.

먼저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김기준 의원님, 문철상 신협중앙회장님, 이금자 생협전국협의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채소값이 폭등했을 때 유기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생협들은 시중보다 훨씬 싼,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 단위로 조합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 구매 계약을 맺어 서로 안정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힘을 모아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안전한 생산 및 유통과정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성장 우선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며 더 이상 사회에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되며 경제적 이득이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협동조합에는 바로 이러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람을 존중하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고, 사회적 역할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오늘 포럼을 통해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과 활성화 방  
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국회의원 박영선



## 축 사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을 대표하시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 !

그리고 많은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는 와중에도 항상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

아울러, 현장에서 협동조합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활동가들과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자 공동체 회복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온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이 제8차 포럼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효시이자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협을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일자리 창출 등 사회갈등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본이 취약한 신설 협동조합이 뿌리내리기에는 여전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저는 우리 신협이 할 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협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신협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협동사회를 건설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신협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논의될 여러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대안들로 구체화되어 신협과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신협중앙회장 문철상

# 축 사

생협전국협의회 대표 이금자(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제 92회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제 8차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에 김기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미래를 짊어지고 계신 많은 협동조합 관계자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협동조합의 변화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10년에 생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회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지정문제를 비롯하여 세법 개정, 공제사업 등 소비자생활협동의 현황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 8차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고 사람 중심의 협동 경제 사업과 공익적 활동을 통해 ‘상생과 협동의 경제 원리’를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안심의 물품 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고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내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이 이제는 일반 시장유통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친환경농산물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생활제는 생산자, 소비자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인식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경영실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협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삶의 변화와 함께 생산자의 삶 역시도 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92회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제 8차 국회협동조합활성화포럼』계기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법과 제도들에 대한 과제들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하며, 생협전국협의회에서도 회원단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높여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생협전국협의회 대표 이 금 자

---

# 주제 발표 1

---

## **소비자생활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99% 시민의 사업체를 향한 차별시정 요구 -**

김형미,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대훈, (사협)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 소비자생활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 99% 시민의 사업체를 향한 차별시정 요구 -

김형미,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대훈, (사협)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 1. 소득 불평등과 경제 격차에 대한 우려, 99% 경제에 대한 관심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연두교서
  - 모두를 위한 기회가 있다는 믿음은 배신당했고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다.
  - “4년간의 경제 성장으로 기업 이익과 주가, 최상층은 이보다 더 좋은 적이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나 평균 임금은 그리 바뀌지 않았다.”
  - 우리의 임무는 이런 트렌드를 뒤바꾸는 것이다.
- 미국에서 부는 피케티 혁명(?) 1)
  - 창조경제의 한 맥락이 비어 있는 현실
    - 창조경제의 배경으로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거론하고
    - 창조경제의 개념을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2)라 정의하는데,
    - 유네스코의 『창조경제보고서 2013 특별판: 지역발전 경로를 확대함』 (Creative Economy Report 2013 Special Edition)<sup>3)</sup> 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

1) 유종일 칼럼 참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4852.html>

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6.5.

3) <http://www.unesco.org/culture/pdf/creative-economy-report-2013.pdf>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창조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와 요구가 있다.”

there is an urgent need to find

# new development pathways

that encourage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pursuit of inclusive, equitable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또한 서문에서는 “시장 주도 접근방식은 지속가능발전에 창조성과 문화가 주는 영향에 대해 편견에 치우친 관점(partial view)만 제공한다. 시장 주도 접근방식은 경제 분석을 넘어선 많은 윤리, 정치적인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 4)고 지적하고

창조경제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다. 왜냐하면 문화산업과 ICT와의 융합, 혁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생각할 때 선진국은 이 분야에서 더 유리하고 성장하며 저개발국은 더 불리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만 창조경제를 본다면 창조경제는 다양성과 복합성, 문화표현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human development)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가능 사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발전의 패러다임이 화폐 소득 증대에서 시민의 좋은 삶(well-being)과 인간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있어 99%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범지구적인 열망<sup>5)</sup>이다.

4) 동 보고서, 18쪽.

5) 유엔개발계획에서 인간발전지수(HDI)를 개발한 이후 국제적인 공통 목표로 등장한 인간발전에 이어,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직속 ‘경제 성과와 사회 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 (아마티아 센, 조지프 스티글리츠, 장 폴



## 2. 경제 발전에서의 협동조합의 위치

- 예일 법대 H. 한즈만 교수는 협동조합은 근대적인 사업체이며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은 저개발 경제보다도 선진국의 시장경제에서 더욱 크다고 지적.<sup>6)</sup>
- 「레가텀 번영지수 2013년」(Legatum Prosperity Index)<sup>7)</sup>에서 노르웨이, 스위스에 이어 번영 순위 3위로 올라간 캐나다의 경우, 의회는 협동조합을, ① 경제의 추진력 ② 경제발전의 대안 주체 ③ 경제 안정화 주체 ④ 시장 효율을 증대하는 추진력으로서 협동조합의 위상을 인지한다. <sup>8)</sup>
- 유엔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한 후에 그 배경을 설명한 문서에서도 협동조합은 각국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sup>9)</sup> 예를 들면,
  -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투자자 소유 금융기관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예금자와 조합원의 신뢰와 신용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신탁은 96개국, 4만9000신탁에서 1억 7700만 명이 금융서비스를 받는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금융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핀란드,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며 캐나다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조합원이다. 뉴질랜드의 GDP 중 협동조합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노르웨이 우유 생산의 90%는 낙농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소매유통시장의 36%는 덴마크생협연합회(FDB)가, 핀란드의 소매유통시장의 42%는 핀란드 생협인 S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미그로와 코업 스위스, 양대 생협이

---

피투시)의 선구적인 작업(『GDP는 틀렸다』 참조) 이후 유럽 및 국제기관에서는 시민의 좋은 삶 측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6) Henry B. Hansmann(1999) Cooperative Firms in Theory and Practice, LTA 4/99, pp.387-403. 이경수 (역)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 『iCOOP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12-2』, 2013년 10월호.
- 7) <http://www.prosperity.com/#/?aspxerrorpath=%2Ftheindex.aspx>, 경제, 기업가정신과 기회, 거버넌스, 교육, 건강, 안전과 치안, 개인의 자유, 사회(관계)자본, 8영역에서의 진보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 8) 『캐나다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Status of Co-operatives in Canada :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ves* 2012년 9월, 제41차 하원  
<http://www.parl.gc.ca/content/hoc/Committee/411/COOP/Reports/RP5706528/coopr01/coopr01-e.pdf>
- 9) <http://www.un.org/esa/socdev/social/cooperatives/documents/survey/background.pdf>

스위스 소매유통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농업, 스위스 농업, 공정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2010년 공정무역 상품 중 생산자협동조합 생산품은 75%를 차지하며(FLO, Annual report 2011-2012) 유럽 생협은 공정무역을 선도적으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통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한편,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① 압축성장에 따른 급속한 농촌 해체와 사회변동 ② 식민지 잔재이기도 한 관제협동조합의 전통 ③ 국가 주도형 생산자협동조합·금융협동조합 진흥·규제정책으로 인한 협동조합 약체 ④ 뒤늦은 제도 정비(소비자생협법, 협동조합기본법) ⑤ 대기업집단 지배형 시장구조 등이라 하겠다.

### 3. 소비자생협의 기능과 의의

- 한스만의 ‘기업의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종종 소비자에게 독점을 행사하기 마련이어서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용자로서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시장계약비용(대표적으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식품을 비롯한 각종 소비재와 서비스를 이용자인 소비자가 소유한 협동조합(생협)을 통해서 개발, 공급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도이다.
- 한국의 생협은 시민의 결사가 자유로워진 198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인 운동으로 탄생하여 친환경유기농업과 국내 농업 보호, 식품안전과 신뢰 수준 제고 등의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다. 안전,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계약 생산하여 초과이윤을 배제한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며 연중 안정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sup>10)</sup>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정부도 주목하였던 점이다. 이게 가능한

10) MBC PD수첩, “함께 살자, 협동조합”; 이금노(2013),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을 중심으로”; 지민진·최우석·박상선(2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 후생의 경제적 가치- 농산물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효과를 중심으로”, <2013 한국협동조합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등을 참조.

이유는, 소비자생협이 사적 이윤을 취하지 않고 비영리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목적 그 자체에 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생협이 발휘하는 공공 기능은, 영리기업의 길항력(拮抗力)을 작용하는 것이다. 파행적인 농산물가격이 소비자를 불안케 할 때 생협의 농산물, 식품의 가격 지수는 영리기업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실제로 2009년 유럽의 신용위기로 소비재 가격이 오르게 되자 환차익을 환수하여 소비자 가격을 내리거나(스위스 생협), 소비재 가격을 저가격으로 유지하여(이탈리아 생협), 소비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업 활동을 견지했다. 또한 일본의 생협은 지자체와 ‘재해 시 긴급지원 물자 공급 협약’을 맺어 지진, 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긴급물자를 실어 이재민에게 제공하고 평소 생협의 가정공급망을 통해서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준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럼에도, 한국의 생협은 현행 생협법의 제46조에 따른 비조합원 이용 금지 등의 규제와 타 협동조합법, 주식회사와는 다른 차별적인 법제도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 경로가 막힌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생협 조합원들이 수백만 명, 세대 조직률 30% 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한국의 생협은 1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세대, 소매유통시장 시장점유율은 1%도 안 되어 집계조차도 어려운 현황이다.

#### 4. 소비자생활협법 차별 대우 및 시정 요구 11)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46조 비조합원 이용 금지의 문제점과 대안
현황	<p>1. 해외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규제 실태 : 해외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어 한국, 일본과 같이 비조합원 이용규제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조합원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 정도. 그 외의 대부분은 투자자 조합원을 인정하거나 비조합원 이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금지 규정이 없음.</li> <li>-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영국은 조합원 자격과 이용에 관해서 정관이 정하도록 '정관 자치'를 기본으로 삼고 있음.</li> <li>- 협동조합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치적 환경, 역사와 문화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하나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정도에 불과함.</li> <li>- 해외의 사례를 보면 조합원 이용 문제보다도 조합원 자격 문제(투자 조합원 인정 여부, 직원 신분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가 더 협동조합의 본질에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나라(영국, 체코, 싱가포르)가 있음.</li> <li>- 유럽과 싱가포르에서는 주민의 소비생활이 소비자협동조합(coop)의 매장을 통해서 영위되는 비중이 크고 따라서 비조합원 이용 금지는 주민의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li> </ul> <p>2. 국내 타 협동조합과의 비교 : 생협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존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국내 타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li> <li>- 따라서 생협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내 협동조합과 비교할 때 생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li> </ul>
문제점	<p>1. 생협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효과를 제약하고 있음.</p> <p>2. 생협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사업을 통한 협동조합 간 협동, 타 부문과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경로는 대부분 일단 생협 매장에서 이용경험에 의하는데 한, 두 번 이용으로 곧장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매장 이용을 해보며 자신이 가입할 생협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됨. 이러한 자기 결정의 시간적 여유, 자기 결정을 위한 긍정적인 경험이 생협의 조합원 확대에 이어지는 것임. 그런데 현재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건과 기간은, 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제46조 1항 1절을 '궁여지책'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삽입되었음.</li> <li>- 비조합원 이용의 허용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 조항은 행정기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관치'를 표현해 놓은 것임, 주민의 입장에서 생협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 경제부문과 자주 접하고 부분적인 이용에서 다양한 이용, 전면적인 이용으로 들어서게 되는 법, 제도가 바람직</li> </ul>

11) 이 요구 사항은 전국생협협의회 주최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3.7.3.),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회 간담회(2014.5.14.)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p>함, 플랫폼이 잘 되면 기차 이용도 편리하고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협 이용이 자유로워져야 사회적 경제가 가까워질 수 있으며 생협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사업단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함.</p> <p>3. 조합원 중심 운영이 약한 타 협동조합법에 비해서, 조합원 중심 운영의 풍토가 강한 생협을 더욱 규제하는 차별 조항임.</p> <p>4.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는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이 생협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역사가 있음.</li> <li>- 70년대 후반에 크게 성장한 생협이 조합원 참여를 바탕으로 반핵평화운동, 미국 수입농산물 반대, 식품첨가물 총량규제 강화 및 식품안전법 제정운동과 같이 사회성이 강한 활동들을 펼쳤던 시기에 생협의 성장을 경계하던 사회, 정치 세력의 압력을 받은 소관부처에서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을 내세워 생협 실태를 조사하면서 신규 매장 개설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현재 일본과 한국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규제의 배경임.</li> </ul>
대안	<p>1. 협동조합의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됩니다. 조합의 최고 자치법규인 정관 및 조합의 자율의지에 따라 비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할지의 문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2.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등 협동조합 관계 법령이 취지하고 있는 사회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함.</li> <li>- 그리고 국내 다른 협동조합, 해외의 협동조합의 운영사례와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비조합원에게도 사업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협동조합 간 형평의 차원에서 바람직함.</li> </ul> <p>3. 세법, 세제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협동조합 제도의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은 일반 영리회사의 이윤의 성격이 아니라 조합 경영과정에서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 실비 이상의 조합원 부담이 발생한 것에 불과함. 때문에 조합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반면,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의 허용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배당 및 청산 시 배분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li> </ul> <p>4.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생협법 개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회에 생협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토론, 논의하여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해줄 것을 희망함.</li> </ul>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세법 개선의 과제와 대안 1 _ 조세특례제한법
현황	<p>1. 생협에 대한 당기순익과세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조합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당기순이익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li> <li>- 동 법에 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lt;조합&gt;의 경우에는 당기순익과세 적용을 받고 있음. 하지만 생협과 동일한 구조(1차 조합-&gt; 2차 연합회-&gt;3차 전국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lt;조합&gt; 뿐 아니라 &lt;연합회&gt;에 대해서도 당기순익과세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 생협은 &lt;조합&gt;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음.</li> </ul> <p>2. 대학 생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은 아직 학업을 하는 시기에 있으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으로서 높은 학자금, 생활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대학교 내에서 조합원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생협이 조합원의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학생협의 기여를 보다 강화하기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li> </ul>
문제점	<p>1. 생협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연합회에 대한 당기순익과세 적용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8호에 생협에 대한 세제 지원의 규정이 있으나, 생협과 구조가 동일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과 연합회가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생협의 경우에는 조합에만 적용되고 연합회는 특례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10~2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li> <li>-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협동의 결과인 연합회를 통해 공동의 자산을 형성하고 사업의 진보와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재투자 및 사업 활성화의 여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li> </ul> <p>2. 대학생협 조합원이 이용하는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조의 학교 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 물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지 않아 대학생협들이 높은 학자금을 감당해야하는 학생에게 복리후생 물자를 원활히 지원하는 것에 애로가 있음.</li> </ul>
대안	<p>1.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연합회에 대해서도 당기순익과세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p> <p>2. 대학생협이 조합원에게 제공, 공급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p> <p>3. 현재 이에 관한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안,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개정을 희망함.</p>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세법 개선의 과제와 대안 1 _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황	<p>1. 국내 다른 협동조합의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영업초협동조합 등의 경우 중앙회 및 자회사 등이 구매,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이용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음.</li>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영업초협동조합의 단위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도 50%를 경감해주는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ul> <p>2. 생협의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같이 농협 등 국내 다른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는 고유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이 같은 세제 감면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li> </ul>
문제점	<p>1. 현재 한국의 생협은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면서 안정적 경영의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자본기업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진입 등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와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생협의 발전과 성장을 기약하기는 어려운 상황임.</p> <p>2. 이를 위해 각각의 생협 조직들은 자본과 인재 등의 핵심 자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적 도전과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물류센터 확충, 친환경식품클러스터 조성 등)</p> <p>3. 다른 국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생협에 대해서는 일체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없어 생협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p>
대안	<p>1. 타 협동조합과 같이 생협이 고유목적의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감면함으로써 생협의 저변과 사업 인프라를 확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p> <p>2. 이와 관련하여 최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개정을 희망함.</p>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총회 의사록 인증절차의 문제점과 대안
현황	<p>1. 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에 의해 법인은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은 법인 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p> <p>2.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인 농협, 신협, 축협, 수협, 임협 등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는 생활협동조합 이외에도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등 많은 협동조합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음.</li> <li>- 다른 협동조합들은 모두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총회 후 등기업무 등에 있어 의사록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만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li> </ul>
문제점	<p>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는 법적 기구로 의무화, 제도화되어 있어 신뢰와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록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와 비용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이 주부, 학생인 생협의 특성 상 총회 참석자의 위임을 통한 의사록 인증을 받기위해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됨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li> <li>- 변호사가 총회에 임석하여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 회당 100만원 내외의 비용 발생</li> </ul> <p>&lt;참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 참석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 공증절차를 진행할 경우 약 1개월의 시간 소요</li> <li>- 변호사가 임석하여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 회당 100만원 내외의 비용 발생</li> <li>- 이 같은 의사록 인증업무를 전국의 170여 조합(생협전국협의회 소속)이 진행해야 함 (등기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마다 의사록 인증을 받으며 거의 매년 필요한 경우가 많음)</li> </ul> <p>2. 타 협동조합의 경우 의사록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생협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의사록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전국협의회 소속)은 이제 전국에 170여개의 인가 조합에 년 총 사업고가 1조원이 넘고 총 조합원 수가 90만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수준도 타 협동조합에 비해 월등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협동조합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li> </ul>
대안	<p>1.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따라 생협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적합한 것으로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의사록 인증에 소요되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p>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 관련 문제점과 대안
현황	<p>1.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p> <p>■ 협동조합기본법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p> <p>■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p>
문제점	<p>1. 개별법과 기본법의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어 기본법은 법인도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법인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p> <p>2. 어린이집, 교육기관 및 기타 법인격이 있는 단체, 기관 등이 친환경 급식, 공동구매 등의 목적으로 생협의 물품을 구매, 이용하고자 할 때 법인(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포함)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기관 대표자 등이 개인 명의로 조합원 가입을 한 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법인의 공식적인 비용처리 및 행정적 처리에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p> <p>3. 해외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개인, 법인 모두를 허용하고 해당 생협이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함. 예를 들어 영국의 대표적인 생협인 코퍼라티브 그룹(TCG)는 810만 명의 개인 조합원과 127개의 법인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혼합조합원제도를 채택함.</p>
대안	<p>1. 협동조합기본법과 동일하게 법인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p> <p>-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생협법에 있어서도 법인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 또는 명시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포함)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p>

6	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현황	<p>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6조에는 공제사업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10년 생협법 개정 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li> </ul> <p>2.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주체인 연합회가 공제규정을 정하기 위한 기준 및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등을 정해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직까지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되지 못해 각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개발과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p>
문제점	<p>1. 공제의 기능은 크게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금융적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보장적 기능이란 조합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공제를 통해서 경감시킴으로서 가계의 생활력을 유지시키고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며 금융적 기능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이 조합 및 조합원에 환류되어 다양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자원으로 활용가능하게 됨.</li> <li>- 사회적 기능은 우선 공제를 통해서 조합원들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가 커짐으로써 인적·물적 신용력이 증진하는 기능, 공제를 통해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인격적 유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을 진전시키는 기능, 공제를 통해서 보험자본에 의한 보험업의 독점을 막아냄으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함.</li> </ul> <p>2. 무엇보다 생활세계에 밀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애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생활상의 변화와 위험에 대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공제가 갖는 보장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li> <li>- 또한 공제를 통해서 모아진 자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조합 내에서 환류되어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위한 더 생산적인 자금 활용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음.</li> <li>- 무엇보다 현재 기존의 공제기관이 갖는 시장화의 경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탈상호주의 경향과 직능별로 제한된 협소한 사회적 접촉면이 갖는 짧은 연대의 한계를 적절하게 균형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공제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li> </ul> <p>3.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p>
대안	<p>1.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의 준비에 바로 착수하여 연내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것을 희망함.</p>

7	공정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생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현황	<p>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의 책임만이 아니라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음.</p>
문제점	<p>1.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법 제정 직후 업무지침의 작성 등을 통해 법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과 오류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경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적인 업무지침(또는 편람) 및 법령 해설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런 이유로 각 시도마다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 재량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p> <p>2. 또한 유사생협(유사 의료생협 및 우리생협 개인 판매장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유사 생협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p> <p>3. 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생협의 경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대안	<p>1.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 실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p> <p>2. 생협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공제사업 및 생협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예산, 인력 등)가 있어야 할 것임.</p> <p>3. 각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관련 정책의 실행에 있어 공조 및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일관된 정책 시행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p> <p>-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관련 업무지침 또는 편람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p>

8	유사 생협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협법 제4조 2항은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가 아닌 자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합 등이 아닌 개인은 생협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운영되는 생협의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무단으로 도용,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li> </ul> </li> <li>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형식적으로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유사 의료생협으로 의심되는 300여개가 넘는 의료생협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li> <li>3. 또한 전국에 약 80여개의 &lt;우리생협&gt;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유의 판매장이 난립되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런 현실로 인해 과거 30여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신뢰와 공신력을 확보한 생협전국협의회 소속의 생협들의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물론 유사 생협의 광고, 영업행위에 현혹된 조합원이 실제로 유사 생협을 이용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li> <li>- 이와 관련하여 생협전국협의회는 여러 차례 불법적인 &lt;우리생협&gt; 판매장에 대해 조사요청 및 민원을 제기했음. (2013.08.02~2014.01.07 : 불공정거래 민원 및 시정조치 공문을 17개 시도에 발송,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행정조치 요청 신문고 민원 등 제기)</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정위 및 각 시도의 효과적인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생협전국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를 청구하였음.(2014.3.30.)</li> </ul> </li> </ol>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생협은 개인 사업자 소유의 판매장으로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영리’소매업임. 그런데도 ‘생협’이란 간판 및 사업자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심’, ‘믿을만한 곳’이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이용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과 생협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영리 소매업이면서도 ‘생협’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li> <li>- 영리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생협이 견지해온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소비자들에게 생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li> </ul> </li> <li>2. 유사 의료생협이 340곳(2013.4월말 기준)이나 설립됨으로 인해 ‘진짜’ 의료생협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이라는 별도의 정의와 명칭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음.</li> </ol>
대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생협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소비자생협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생협이 아닐 경우에는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li> <li>2. 현재 각 시도 및 공정위가 &lt;우리생협&gt;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사용의 즉각적인 금지 및 생협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조치 필요</li> </ul> </li> </ol>

9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 관련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현황	<p>1. 농림축산식품부는 233억 원을 들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2013.4.30.)한 바 있음.</p> <p>2. 또한 &lt;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gt;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2014.3.10.)하고 올해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p> <p>* &lt;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gt; 주요 내용</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가계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p> <p>나.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p> <p>다.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p> <p>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것</p>
문제점	<p>1. 위 법률(안)의 ‘농산물 직거래’ 정의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간 선도적으로 직거래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 농업의 보호와 유통구조개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생협의 사업구조는 법적으로는 직거래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직거래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생협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함.</p> <p>2. 이는 ‘국민농업’이란 표현이 회자되고 중시될 정도로 국내산 농산물 및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직거래에 있어 조직화된 소비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p> <p>3. 또한 유통에 대한 노하우, 경험이 부족한 생산자조직 또는 거대 농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실효성은 낮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됨.</p>
대안	<p>1.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직거래를 정의하기보다는 직거래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거래형태를 직거래로 인정하도록 해야함.</p> <p>2. 생산자에게 더 높은 수취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직거래의 취지와 목표에 비추어 소비자생협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직거래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직거래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10	대학생협이 국립대학교 시설 사용에 사용료 부과 문제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간 대학생협이 생협법 9조 및 공공단체로 지정받아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시설로서의 학내구성원의 후생복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었음.</li> <li>2.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라 국립대학교 생협의 시설 이용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1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이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li> </ol>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국립대학교 대학생협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대학생협이 운영하는 학내 식당, 매점, 서점 등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될 수 밖에 없음.</li> <li>2. 높은 학자금, 주거 및 생활비 부담에 더해 학내 후생복지 시설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된다면 대학생들의 생활안정과 면학여건 조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임.</li> </ol>
대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9조에 의거 국립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함.</li> <li>2. 이와 관련하여 생협법을 보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 소속의 대학생협에도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3. 현재 박홍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음</li> </ol>

## 5. 생협 현황 자료 (생협전국협의회 소속 생협)

• 한국 소비자생협 현황(2013년 12월 말 현재, 전국생협의회 집계)

단체명	회원조합수 (개)	조합원수 (세대)	출자금 (원)	사업공급액 (원)
두레생협연합회	28	142,359	3,794,889,108	101,649,000,000
한살림연합	21	410,211	40,192,779,000	304,452,202,000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78	194,856	11,780,000,000	427,900,000,000
대학생협연합회	31	125,438	2,760,697,190	172,236,917,182
정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3,129	437,589,549	968,136,243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생협	4	1,391	41,930,000	2,890,000,000
인드라망	1	1,403	94,000,000	1,100,000,000
부산YWCA생협	1	2,045	67,130,000	1,251,397,958
생명의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1,048	190,354,380	791,297,842
행복중심생협연합회	11	30,170	4,900,000,000	16,900,000,000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2,019	83,000,000	951,000,000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합계	178	914,069	64,342,369,227	1,031,089,951,225

○ 5개 연합회 : 두레생협연합회(회원조합 28곳),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회원조합 78곳), 한국대학생협연합회(회원조합 31곳), 한살림연합(회원조합 21곳), 행복중심생협연합회(회원조합 11곳)

○ 7개 단위생협 : 단위생협협의회(정농생협, 인드라망, 한울생협, 푸른평화, 부산YWCA생협, 부산생협, 생명의공동체)





---

# 주제 발표 2

---

## 신용협동조합의 현황과 법과 제도 개선 과제

유영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신용협동조합의 현황과 법과 제도 개선 과제

유 영 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1. 시작하며

-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불황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약탈적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에 의하여 1%의 소수에게 부가 편중되고, 나머지 99%는 극심한 빈곤으로 전락하고 있음.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기주의·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며 사회양극화와 사람중심이 아닌 철저한 자본 중심의 사회로 고착화되고 있음.
-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와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신탁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경기불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고금리·고성장 시대에서 선진국형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운용체계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
- 그리고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의 과실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실현이라는 주제가 주요한 화두로서 시대적과제로 대두되었음.

## 2.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함) 현황

### 1) 신협의 이념 및 정신

① 이념 :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② 신협운동의 지상 목표 : '복지사회건설'

③ 신협운동의 정신 : 자조 / 자립 / 협동

④ 신협운동의 3대 과제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 2) 목적 및 기능

○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

○ 설립목적(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공동유대(지역, 직장, 단체)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 자조·자립·협동의 3대정신과 경제운동, 교육운동, 윤리운동의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

○ 신협의 기능 및 역할

- 근검과 절약, 저축의 미덕을 장려하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으로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

-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대출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
-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 지역 내에서 조성한 금융자금을 지역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 자발적 의지를 통한 설립과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의해 운영되는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서민들의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

### 3) 신협외역사

#### 0 신협외역사

- 184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여 1960년 미국인 메리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
- 우리나라 신협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주도형 협동조합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깬 민간주도형 협동조합운동의 성공사례(KDI 김준경 박사)

#### 0 주요 연혁

- 1960년 5월 :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성가신협 설립
- 1972년 8월 : 신협법 제정
- 1989년 9월 : 신협중앙회 및 시도연합회 설립
- 1998년 4월 : 시도연합회를 신협중앙회로 통합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가입
- 2000년 10월 : 금융결제원 참가
- 2008년 12월 : 차세대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 2014년 5월 : 자산 57조원 조성

#### 4) 신협 조직 현황

○ 조직 현황(2014. 5말 현재)

- 조합원 : 약 570만명
- 단위 조합 : 950조합(영업점 1,673개)
- 자산 : 약 57조 4천억원
- 중앙회 : 중앙회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 수행
- 아시아신협연합회 : 태국(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신협은 이사국
- 세계신협협의회 : 미국(매디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신협은 세계 4위의 신협국가

### 3. 신협과 관련된 주변 환경

#### 1) 내적 환경

- 현재 신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정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에 따른 고강도 규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수익구조가 날로 악화되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신협 내부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협의 존폐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한편 신협 관계자 대다수가 위기의 원인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정부

당국의 고강도 규제 등의 외부적 영향과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내부적 문제로 인식하며, 정체성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2) 외적 환경

-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은,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며 금융기관끼리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 동안 가계(조합원)대출에 치중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신협을 비롯한 제 2 금융권(상호금융)은, 대형은행 등 제 1금융권의 가계대출시장의 적극적인 진입으로, 서민금융시장의 과대경쟁 체제에서, 경쟁력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압박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약화와 주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 특히 신협은,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수협·산림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관할로 사실상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신협은 금융기관 기준으로 직접 규제를 받는 반면, 유사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으로서 규제의 상당부분을 자율 규제로 하고 있어, 관할기관 차이에 의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이는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위배이며, 이러한 규제차이는 신협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유사협동조합 간 규제차이(예)]<sup>12)</sup>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외부회계 감사	매년 300억 이상 전체조합	500억 이상 4년마다(농협), 제도만 있고 미 실시(수협)	500억 이상, 제도만 있고 미 실시
순자본비율	출자금 제외	출자금 포함	출자금 포함
비조합원 거래	30% 이내	50% 이내, 준조합원 제도로 사실상 무제한	무제한
중앙회대출	직접대출 불가	직접대출 가능	직접대출 가능

- 한편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에 의한 교육, 컨설팅, 상호거래, 금융지원, 기금조성 등의 영역에서 신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 받고 있음. 또한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활동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8개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의 역할을 명시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새누리당/대표발의 유승민 의원)이 입법추진 중에 있음.

#### 4. 신협 발전을 위한 주요 내부과제(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 1) 대사회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 현재 신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협을 잘 모르거나, 설혹 안다고 해도 일반금융과의 차이점 즉 금융협동조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는 600만 이라는 신협 조합원들 대다수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과 비슷함. 결론은 대다수 국민들이 신협을 잘 모르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한편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신협이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

12) 출처 : 신협중앙회 기획조정실



화되어 금융협동조합다운 특화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서민금융의 역할이 미비하며 언제라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한 마디로 ‘물가에 내놓은 갓 난 아이’처럼 생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정치권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인식은, 신협이 금융협동조합이며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 동의하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신협이 협동조합다운 금융협동조합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존재처럼 느끼고 있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협은 현재 대 사회적으로 신뢰와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왜곡된 인식과 함께 신협이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신협이 대사회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 사회적으로 신뢰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는 사회공헌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데, 중앙회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칭 ‘사회연대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지역본부 및 지역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과의 소통과 협동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2)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서민금융역할 강화

- 현재 전국 신협(지역신협)의 조합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래하는 조합원(참조합원)의 비율이 약 10%도 되지 않음. 이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래하는 일반금융권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반증이며, 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주로 예탁금(정기예탁금)을 중심으로 자산형성(전체 자산의 약 80%이상)이 이루어지며, 수신금리에 의해 수시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철재 조합원이 대다수 임.
- 이러한 현상은 여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탁금 위주로 거래하는 조합원들의 특성상 대출에는 관심이 없음. 이는 일반은행보다 대출금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조합원들의 여수신 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라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한 외부의 충격에 경영기반이 쉽게 흔들리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1997년 IMF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며,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재무부에서 금융위원회로 감독권 이관)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상실되는 계기가 되었음.
-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상실은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협동조합 스스로 가치와 원칙에 의한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함.
- 이후 협동조합의 특성이 고려된 경영은 배제되고, 오로지 금융기관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고, 신탁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신탁의 정체성의 문제제기로 이어지며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러므로 관계금융 및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참조조합원(진성조합원)확대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신탁의 가치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며 협동조합다운 금융 협동조합 운영이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발전에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3)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동을 위한 다양한 역할 강화

- 주지하다시피 협동조합기본법 발표 이후 4,823개('14. 05말 기준)의 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완료되었고, 사회 공익적인 경제영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경제영역으로 자리 매김 되었고, 주요한 국정과제이며 사회적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 함. 그러므로 신협 또한 이와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하는 과제가 있음.
- 현재,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신협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도 신협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치적·사회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 됨.
-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의 제 6원칙인 협동조합 간의 협동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음. 이는 자본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단위 협동조합들이 서로 자율적인 연합조직을 만들고,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며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협동조합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지역별, 업종별 간의 수평적인 협동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고, 협동과 연합조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이처럼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교육, 연구, 금융, 유통 등의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였고, 개별조직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신규조합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 퀘벡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 발전하도록 신협이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역할이 필요함. 이는 신협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기금조성 등)
- 현재 전국에 약 950개의 신협 중 670개가 지역신협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그러므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신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음. 54년의 역사 속에서, 그 동안 쌓아왔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역량 등은 충분히 지역사회 협동네트워크를 견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간의 협력부서인 ‘사회공헌반’을 확대 개편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역본부와 지역협의회<sup>13)</sup>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함. 국내외에서 전개되어온 사회적경제의 실천적 사례와 정책, 관련 금융수단 및 실천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협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협 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포털 사이트 구축, 신협 내 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매

13) 현재 신협서울협의회는 내부에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위원은 서울협의회 운영위원, 단위조합 이사장, 실무책임자, 지역본부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음.

뉴얼 개발, 일선 신협이 다양한 실천사례 수집과 확산,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관련 부처 등과의 협력 창구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4) 교육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경영철학은 끊임없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규조합원 교육은 중단되었고, 또한 임직원 교육도 주로 중앙회 연수원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적인 교육수준에 머물러 있음. 특히 단위 신협이 스스로 자체 교육을 실행하는 조합은 전무한 상황임.
-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이 부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며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과거처럼 가입조건으로 시행되었던 신규조합원 교육을 부활시켜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리고 중앙회 직원 및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하여 신협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특히, 향후 신협의 지도자 양성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위조합 스스로의 자체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 5) 젊은층 유입을 통한 고령화된 조직의 체질 개선

- 현재 신협은 조합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음. 이는 신협의 지속적인 발전 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신협의 미래는 밝지 못함.
-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일반국민들 중에 젊은 층들의 신협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그러므로 지역사회

에서 젊은 층과의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신협이 참조합원으로 유입해야 함.

- 또한 초·중·고등학교와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경제 또는 협동조합 교육, 직접 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매점 협동조합),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영역에서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행하는 협업화 사업 등을 개발해야 함.

## 6) 저비용구조의 구축

- 신협의 저축성 예탁금 비중을 줄이고 요구불 예탁금의 확대를 통해 저원가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임. 요구불 예탁금은 신용대출금과 같이 일선현장에서 단순거래 방식이 아닌 관계금융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
- 또한, 신협은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달비용이 들 어가지 않는 적립금의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안목의 고배당 정책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미래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함.
- 특히, 향후 국내경제가 저금리·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대출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예대마진이 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저비용구조는 조합의 생존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결국, 신협이 저비용구조를 구축할 경우 대출금리 경쟁력이 강화되고, 특히 서민대출 지원여력(금리인하, 규모 확대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5. 법과 제도 개선 방향

### 1) 경영업무 부분

#### 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신탁은 1972년 신탁법이 제정됨에 따라 248조합이 재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종전에 단순히 출자금을 조성하여 대출하던 업무에서 벗어나 예적금을 취급하게 되었고, 1972년 4월 최초로 18조합이 참여하여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보험)사업을 시작함.
- 신탁은 IMF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2004년까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600여개의 부실조합 및 한계조합(주로 직장 신탁)을 정리함.
- 이후 재무부(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관리감독권 이관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의 시각은 금융기관으로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실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금융협동조합의 특성과 서민금융기관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금융권(은행)과 똑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정책금융이 주를 이루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확보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신탁의 역할 주어진다면,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시 되는 현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관리체계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② 서민금융 역할제고를 위한 신규설립 허가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 1998년 IMF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하였음. 신탁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인가권을 바탕으로 신탁의 신규 설립을 사실상 원천봉쇄 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음.(직장조합만 허용)
- 신탁법 제7조(설립)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신탁의 신규설립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 함.
- 서민금융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신규설립이 필수적 임. 신탁부채 지역이나 각종단체 등의 신규조합 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일정기간 동안 서민금융에만 전념토록 하는 조건(별도의 정의 필요)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부시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과다분포 또는 과당경쟁을 문제 삼고 있지만 금융이용자(특히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이용의 편의성(높은 접근성, 높은 경쟁효과 등) 측면에서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전부터 공제상품이나 소액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던 협동조합 형태의 많은 조합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기존 금융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등



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이 원할 경우 공제취급조합이나 소액대출 기관들이 신탁으로 전환하거나 소외계층 중심의 금융공급을 전담하는 신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음.
- 한편으로는 기존 신탁이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나 활성화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신탁의 설립 허용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 ③ 출자금의 순자본비율 인정

- 출자금은 결산후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성격이 있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금성격도 있음. 그러나 회계상으로 출자금은 자본으로 분류되어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감독규정상 순자본비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이 있음.
- 또한, 신탁의 경우 출자금은 환급성 제한, 예금미보호 등으로 적극적인 증자 유인이 부족하고, 후순위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자본 확충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순자본비율에 포함하여 조합이 출자금을 통한 자본 확충 및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개선되어야 함.

### ④ 공동유대의 현실화

- 공동유대는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신탁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신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 및 전자거래의 도입 확산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면서 행정적 경계에 기반 한 기존의 공동유대가 조합의 활동범위를 위축시키고 있음.

- 신협이 공동유대는 경제권·생활권·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정하도록(법 제9조) 하고 있으나, 현재는 행정구역만을 반영하여 동일한 시·군·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규정(령 제12조)되어있고, 비조합원 거래가 제한된 상태에서 하나의 시·군·구로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 금융 소비자의 금융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 반면, 유사협동기구인 농·수협,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 한도를 자율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므로 신협의 공동유대를 현행 '동일한 시·군·구'에서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한 시·군·구'로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금융지원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가능해진다면, 공동유대 현실화는 필수조건이 될 수밖에 없음.

#### ⑤ 중앙회의 직접 대출 허용

- 신협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의 예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보험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14. 05월말 현재 약 20조 운용 중)
- 신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신협법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법상 제약으로 대출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03년 신협법 개정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 연계대출만 가능함.
- 반면, 농·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회원에 대한 직접대출이 가능함. 그 결과, '14년 기준 신협중앙회는 총 운용자금중 약 90%를 유가증권으로 운용중이며, 일반 대출은 약 3%에 불과한 실정임.
- 그러므로 신협중앙회의 효율적 자금운용, 민간투자 방법의 다원화를 위해 SOC대출 등에 한해 신협법을 개정하여 직접대출 허용해야 함. 이를 통하여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및 신협중앙회 자금운용의 다양성이 확보 될 수 있음.

## ⑥ 임의적립금의 사용용도 확장

- 임의적립금은 조합이 이익을 내부 유보함으로써 향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결손에 보전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조합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임의적립금을 사업 준비금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하여 법정적립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모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2010년 이전까지는 임의적립금 중 배당(평균)을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감독당국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조합은 배당평균을 위하여 이익금을 임의적립금이 아닌 차기이월잉여금으로 처리하기도 함.
- 이는 차기이월잉여금 계정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총회시 조합원으로부터의 배당압력 야기 할 수 있어, 임의적립금을 배당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 균등화를 기하고자 함.
- 기업 회계기준상에서는 임의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당에 사용 가능하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규제 원칙에도 어긋남. 그러므로 임의적립금을 사업 준비금 뿐만 아니라 배당 준비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추가 할 필요가 있음.
- 매 사업연도 배당을 균등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예측 가능한 배당지급을 통해 조합원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조합은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신뢰도 제고 가능해지며, 출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유지 또는 추가 납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⑦ 타 법인에 대한 출자·투자 허용

- 신협은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장학재단 설립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법적제약이 있음. 일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출자나 투자를 통한 사업진출이 제한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전개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조합의 참여 및 이용이 절대적인 중앙회의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참여도 불가능하여 중앙회 사업 다각화에도 애로가 있음.
- 농·수협 및 새마을금고는 모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음.
- 조합사업을 위한 타법인 출자나 투자조항을 신설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 및 출자 전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구분별 출자를 규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사의 직무로 자회사 조사권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조합의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합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중앙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합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및 사업의 조기 활성화 도모 할 수 있을 것임.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금융지원 방법으로 대출만이 아니라 직접 출자를 하거나 투자형식을 통한 지원 또는 기금 조성에서의 참여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협동조합 등(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 영농(어)법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복지사업체 등)에 대한 투자 내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

## ⑧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변화 필요성

- 서민경제 악화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부재의 상황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장논리(금융지원)로 접근해야 할 대상과 복지논리(재정투입)로 접근해야 할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금융지원은 상호금융기관 채널을 통하여, 재정투입은 정부의 공적기관 또는 위임기관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고, 높은 이자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부업, 카트론 등을 대체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신협·농협·수협의 서민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⑨ 정부의 서민신용보증제도 도입

- 현재의 높은 신용대출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없는 한 담보중심의 대출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현재 감독기준 등에 의하면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발생시 대손부담이 담보대출보다 3~4배에 달해 대부분 조합들이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서민에 대한 대출시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주는 신용보조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서민신용보증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임.

## ⑩ 서민금융 관련 정책창구 다변화

- 신협은 지역사회에서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을 주거래 고객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모델 자체가 서민 친화적인 바 서민관련 정책 금융창구로 적합함.
- 신협은 제한된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밀착경영을 펼침에 따라 서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서민의 금융수요 포착이 용이함.
-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및 학자금 대출 등 서민지원형 정책 금융창구로 신협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협동조합(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신협 사업이용에 대한 허용

- 신협은 조합원의 이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우 일부는 신협의 조합원일 수 있으나 아닌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임.
- 대출의 경우에는 타 협동조합이 신협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출자나 기금 조성 등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신협의 원칙인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게 됨
- 신협법 조합원자격 기준 조항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공동유대 내에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신설하여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②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 조건완화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초기단계여서 사업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유사한 형태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도 아직은 자립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감독당국은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우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충당요건을 이행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 건전성분류기준이 고정단계 없이 바로 요주의에서 회수 의문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의 형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충당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되어 있음.
-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대출의 경우도 고정이하로 분류되면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요주의로 충당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사업에 리스크를 안으면서 자발적으로 원활한 대출공급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타 대출과는 달리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조건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임.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특례보증제도’의 한도(3,000만원)를 확대하여 보급하는 것임.

## 6. 소 결

- 신탁이 대내외적인 어려움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국내경기침체

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문제, 즉 신탁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를 토대를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다시 말하면, 문제점을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하며, 외부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신탁이 어떠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탄탄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임.
- 현재 신탁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신탁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 대 사회적인 소통과 협동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① 지역사회 밀착형 관계금융 강화 ②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동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아직 신탁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한데, 이는 신탁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됨.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적극적으로 신탁과의 협동과 연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아이템 개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앞으로의 신탁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신탁,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착한 금융,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금융, 나눔과 호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금융으로 발전하기를 기원 함.